



» 입법예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개정령(안)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 제2005-44호, 2005.2.22)

개정이유

성실감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한 책임감리 용역평가의 대상 및 평가결과 우수감리전문회사 · 우수감리원의 지정 요건을 정하고, 설계의 내실화를 위하여 설계감리 · 설계자문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을 허위로 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설계의 내실화를 위하여 설계자문 및 설계의 경제 성 검토대상 공사를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로 확대하고, 설계감리대상을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로 확대
- 나. 건설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도록 함
- 다.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계획수립 대상을 중 · 소규모 건설공사로 확대하고,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사를 강화
- 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허위로 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과를 조작하는 행위등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
- 마. 발주청으로 하여금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 시공감리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바.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책임감리, 소방 감리, 전력시설물 감리, 통신감리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 · 관리하는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를 규정

사. 성실감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한 책임감리 용역 평가의 대상 · 실시시기, 평가결과 우수감리전문회사 및 우수감리원 지정요건, 지정 취소절차 등을 규정

아. 감리전문회사 등록사무 지방이양에 따라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관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위임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 제2005-45호, 2005.2.22)

개정이유

설계내실화를 위하여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 능력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건설공사 부실측정에 따른 부실벌점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별점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보전비계상요율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부공고 제2005-15호, 2005.2.23)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 및 피공제자 관리 방식을 공제증지 구입 · 청부 방식에서 전산관리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증진과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규
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부공고 제2005-16호, 2005.2.23)



개정이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 납부 및 피공제자 관리 를 전산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복지수첩 재발급 및 근로일수 산정 기준 등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근로내역신고서를 복지수첩발급신청서로 볼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단서)
- 나. 공제부금을 금융기관에 자진납부 함에 따른 공제 부금 납부일 산정을 위한 근로일수 산정기준 등을 정함(안 제11조).
- 다. 과태료 징수절차의 준용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도록 함(안 제19조)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 제2005-60호, 2005.2.28)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투자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투자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제재토록 함(안 제5조제2항 별표제2호나목 신설)
- 나. 감독기관에 대한 업무 또는 재산상의 자료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

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부동산투자회사등을 제재 토록 함(안 제5조제2항 별표제2호나목 신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증 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 제2005-62호, 2005.3.3)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의무제도 신설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04.12.31 공포, 법률 제7306호)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건설업자의 겸업제한 및 영업범위 제한 완화
 - (1)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업종선택을 제한하고,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의 영업범위를 인위적으로 구분함으써, 다양한 영업활동과 자율성을 저해하고 업무영역 확보를 위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2) 일반건설업자의 전문건설업종 겸업가능업종에 상 하수도설비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및 수중공사업을 추가하고, 전문건설업자의 소규모 복합공사 원도급허용범위를 현행 1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함
 - (3) 건설업자의 겸업제한 및 영업범위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건설공사 수행체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건설업자간 경쟁을 활성화하여 건설업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나. 4대보험 소요비용 등 건설공사 원가 반영
 - (1)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관련법률상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보험 등의 소요비용이 건설공사 도급계약시 공사원가에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가입을 회피하

고 있어 개선하려는 것임

- (2)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등의 실제 소요비용을 명시할 수 있도록 공사원가반영비율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도록 하고, 발주자는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초과 지급한 금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함
- (3) 4대보험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등과 관련한 대금지급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원·하수급 인간 비용전가 등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4대보험 가입률 등을 제고함으로써 일용근로자 및 하수급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 및 직접시공비율 설정

- (1) 소규모 공사의 경우 입찰제도의 변별력 부족 등으로 공사의 전매 및 일괄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을 일삼는 입찰브로커가 성행하고 있어 이를 퇴출하려는 것임
- (2)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30억미만 공사로 하고, 직접시공비율을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공사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8월의 영업정지를 부과함
- (3)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건설업체는 퇴출하고 직접시공이 가능한 견실한 건설업체를 보호 육성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됨

라. 일괄하도급이 가능한 계획·관리 및 조정의 범위 명확화

- (1)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예외적으로 일괄하도급하는 경우에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관리 및 조정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2) 건설공사의 계획·관리 및 조정을 위하여 공사에 투입되는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및 시공관리를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위한 대책 등을 수립·시행토록 함
- (3)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사 수주후 일괄하도급을 하는 불법·부실 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증 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 제2005-63호, 2005.3.3)

개정이유

건설업 폐업신고제도 신설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04.12.31 공포, 법률 제7306호)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의 통보

- 공사수주후 일괄하도급하는 부실건설업체를 퇴출하기 위하여 30억 미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는 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는 경우 직접시공할 공사와 하도급할 공사를 분리하여 통보토록 함

나. 건설업 폐업신고 방안 마련

- 건설업 폐업신고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폐업신고서 서식 등 폐업신고 절차를 마련함

다.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 완화

- 공공공사 낙찰률이 대부분 88%미만인 점을 감안하여 현재 공공공사중 88%미만 낙찰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적용을 허용하던 것을 82%미만 낙찰공사로 하향조정함

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면제요건 완화

- 수급인이 3천만원이상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4천만원이상 하도급계약시에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토록 그 요건을 완화함